



## IV. 외국인투자 환경

###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

#### 가. 외국인투자 정책

- 1980년대 이후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실행해왔음. 1991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에 따라,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활동에 대해 100%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고, 1996년 동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Negative List를 축소하였음<sup>1)</sup>.
- 헌법에 따라, 필리핀은 외국인의 대중매체 소유와 해양자원 이용(심해 어업 제외)을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업(최대 30%), 공공사업의 관리 및 운영(40%), 사유지 및 교육기관의 소유(40%)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1993년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sup>2)</sup>은 외국인의 토지

1)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공화국법 제7042호(Republic Act 7042)이고, 1996년 개정된 법은 공화국법 제8179호(Republic Act 8179)임.

2) 공화국법 제7652호(Republic Act 7652)

소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토지 임대기간을 최초 50년에서 2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외에 다음의 부문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한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음.

·은행업 : 1994년 ‘공화국법 제7721호(Republic Act 7721 of 1994)’ 및 2000년 ‘일반은행법(General Banking Law of 2000)’<sup>3)</sup>

·소매업 : 2000년 ‘소매업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Law)’

·다운스트림 석유산업 : 1998년 ‘다운스트림석유산업규제완화법(Downstream Oil Industry Deregulation Act of 1998)’<sup>4)</sup>

—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EPIRA)’에 따라, 국영 전력 독점기업인 Napocor의 발전 및 송전설비 민영화와 도매시장(wholesale market pool)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발전 및 배전 부문의 전력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되었음.

—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니셔티브들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주변국들에 비해 부진한 상황임.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

3) 공화국법 제8791호(Republic Act 8791)

4) 공화국법 제8479호(Republic Act 8479)

#### IV. 외국인투자 환경

2008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필리핀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실적은 2006년 29억 2,100만 달러에서 2007년 29억 2,8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접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 가장 낮은 수치임.

- 2008년에는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이 전년대비 48.7% 감소한 15억 300만 달러로 급감하였음.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영국,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및 건설업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양질의 노동력 및 필리핀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정부패,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행정절차, 예측 불가능한 정책 등의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필리핀의 투자환경은 여타 인접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편임.

- 근로자들의 영어 능력 감소와 함께 사업등록 절차, 관세 및 세금 납부 등에서 복잡한 규정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불확실한 규정 적용과 필리핀 법원의 비교적 쉬운 임시금지명령 발급 성향 등이 외국인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9월에 발간된 세계은행(World Bank)의 Doing Business Report 2010에 따르면, 필리핀은 기업경영여건 순위에서 183개국 중 144위를 기록하였음.

## 나.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 (1) 개 요

— 필리핀은 복잡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1987년 ‘종합투자법(1987 Omnibus Investments Code: OIC)<sup>5)</sup> 및 1995년 개정법(Republic Act 7918 of 1995), 1995년 ‘특별경제지대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sup>6)</sup>, 1991년 ‘외국인투자법’ 등임.

— 동법들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업, 농업, 광업 및 기타 부문의 국내 및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및 특권이 제공됨.

- 투자 자본금에 상당하는 고용기회 제공
- 토지, 광물, 임산, 수산 등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자원의 이용 개선
- 근로자의 전문적 기술 향상
- 미래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 제공
- 국제적 경쟁력 표준에 부합
- 수출 기여

— ‘종합투자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BOI)의 등록 자격이 되어야 하며, 투자위원회

5) 행정명령 제226호(Executive Order 226)

6) 공화국법 제7916호(Republic Act 7916)

#### IV. 외국인투자 환경

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을 명시한 투자우선계획 (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을 매년 발표함. 일반적으로 투자위원회는 신규 사업을 선호하나, 적격 사업의 확장 및 현대화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있음.

-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소득세 면제기간 적용, 수입 원료에 대한 세금 및 관세 면제, 지방세 면제 등이 있으며, 추가 인센티브는 지역본부 또는 창고를 운영하거나 시골의 저개발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제공됨.
- 특별경제지대 투자자들에게는 1995년 ‘특별경제지대법’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됨.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에 등록하고 특별경제지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는 ‘종합투자법’에 따라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기업들보다 더욱 광범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 특별경제지대는 농공업, 공업, 관광, 휴양, 상업, 은행, 투자 및 금융센터가 소재한 지역으로 대통령령(Presidential Proclamation)에 따라 정해지며, 공업단지, 수출가공 또는 자유무역지대, 관광 및 휴양센터 등이 이에 속함. 대통령령 제66호에 따라, 이전에 수출가공지대청(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EPZA)에 등록된 기업들도 ‘특별경제지대법’의 적용을 받음.
- 수출이 총수입의 최소 50%를 차지하는 기업은 1994년 ‘수출개발법(Export Development Act of 1994)<sup>7)</sup>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동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수출자는 투자위원회, 필리핀 경제지대청, 상공부(DTI)의 수출무역촉진국(Bureau of

7) 공화국법 제7844호(Republic Act 7844)

Export Trade Promotion) 또는 의류섬유수출청(Garments and Textile Export Boar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 면제기업, 다른 법에 따른 소득세 면제기업, 수출품의 국내부가가치율이 10% 이하인 기업 등은 동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종합투자법’의 일부 규정은 외국기업들의 인센티브 수혜 자격에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국내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최소 20만 달러 상당의 폐소화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투자자들은 동 자본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수출지향기업(export-directed enterprise)들도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위원회에 등록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생산품의 수출비중 요건은 국내기업(최소 50%)보다 외국기업(최소 70%)에게 더 높게 적용되고 있음.

## (2) 일반 인센티브

— 투자위원회(BOI)가 ‘종합투자법(OIC)’에 따라 매년 투자우선계획(IPP)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부여되는 인센티브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위원회의 인센티브는 100% 외국인 소유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 인센티브들로는 ‘개척지위(pioneer status)’의 신규 사업들에게 사업 개시로부터 6년간 소득세 면제기간의 혜택이 제공됨.

#### IV. 외국인투자 환경

· ‘개척지위’는 ① 상업적 규모로 필리핀에서 이전에 생산되지 않은 상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 ② 필리핀에 새로운 기술, 설계, 가공방법 등을 도입하는 기업, ③ 국가적인 경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④ 대규모 투자 및 표준 이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에게 부여됨.

— 투자우선계획에 열거된 ‘비개척지위(non-pioneer status)’의 신규 사업들은 4년의 소득세 면제기간의 혜택이 제공되고, 확장사업은 3년까지 소득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음.

—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들이 제공됨.

- 해당 사업이 등록 후 5년 동안 투자위원회가 규정한 자본자산 (capital Assets) 비율을 충족한 경우, 과세소득에서 인건비의 50%를 추가 공제
-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해당 기업이 필요한 인프라 공사를 수행한 경우, 발생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 단, 광업 및 임업 관련 사업은 제외
- 농업 생산자들은 사업등록으로부터 10년간 종축 및 유전물질의 수입에 대해 면세 가능. 국내 종축 및 유전물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공제도 동일 조건에서 이용 가능
- 보세 제조창고를 보유한 등록회사가 위탁장비에 필요한 공급부품 또는 예비부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면세
- 부두 사용료와 모든 수출관세, 세금, 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 장비, 예비부품, 원료 및 공급품의 수입과 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 수출상품 및 구성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공급품 및 반제품에 대한 세금 공제
- 관세 보세창고를 보유한 수출 생산자가 생산품의 최소 70%를 수출하는 경우 예비부품 및 공급품에 대해 세금 및 관세 면제
- 이외에 투자위원회 등록기업은 자본재설비, 기계류와 관련 예비부품 및 부속품의 수입에 대해 0~1%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음. 동 인센티브는 2011년 6월까지 또는 의회가 ‘종합투자법’을 개정할 때까지를 시한으로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음.
- 투자위원회에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회사소개서, 지정양식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비용에 따라 1,500~6,000페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투자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투자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재무추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필요서류들로는 정관 및 내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등록증명서, 과거 3개년도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소득세 신고서 등이 있으며, 투자위원회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인센티브 신청을 승인함.
- 수수료는 사업비용의 1%로 이 중 1/10(단, 최소 5,000페소, 15,000페소 이하)이 등록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함.
- 투자위원회가 20영업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가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복



#### IV. 외국인투자 환경

잡한 사업은 현지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우선계획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 활동을 하는 투자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내국인 소유기업은 생산품의 최소 50%가 수출용이어야 하며, 외국인 소유기업(외국인 지분 40% 이상)은 생산품의 최소 70%가 수출용이어야 함.
- 필리핀에 최소 75,000달러(관광업은 50,000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은 거주, 복수입국 및 특혜를 허용하는 특별투자자 거주비자를 받을 자격을 가짐.
- 1997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97)’<sup>8)</sup>에 따라 영업순손실의 이월이 가능하며, 총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영업순손실은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될 수 있음. 한편, 광업회사들 앞으로는 감가상각 공제액 계산시 자산의 장부가격에 대해 가속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음.

### (3) 산업 인센티브

#### □ 투자우선계획

- 2009년 3월에 승인·발표된 투자우선계획(IPP)은 ‘우선 활동(Preferred Activities)’, ‘의무 리스트(Mandatory List)’, ‘수출 활동(Export Activities)’, ‘민다나오 이슬람자치지역(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 ARMM) 리스트’ 등 크게 4개로 구성됨.

8) 1997년 ‘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8424호(Republic Act 8424)

<표 IV-1> 투자우선계획의 우선 활동(정규 리스트)

구 분	내 용
농업/기업농업 및 어업	농산물, 수산물, 바이오연료, 사료 및 유기비료, 생명공학 제품 및 서비스
인 프 라	운송(항공, 수상 및 대중 철도수송), 용수(용수 공급 및 분배), 물류, 에너지(재생에너지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도입하여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발전사업, 선교지역 소재 발전설비, 민영화 설비), 공동 주택, 물리적 인프라, 석유 및 가스관 사업, 'Build- Operate-Transfer (BOT)법'에 따른 사업
기술 상품 (Engineered Products)	조선, 기계 및 장비 제조, 기타 운송장비(항공, 수상 및 육상) 제조, 기초 철강제품 제조
관 광	숙박시설, 리조트 및 은퇴자마을 설립, 의료관광, 의료건강 상품 및 서비스
B P O	음성 및 비음성 IT 이용 가능한 서비스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ies)	BOP 제외 IT 이용 가능한 서비스, 영화, TV 및 극장예술 제작
전략 활동 (Strategic Activities)	최소 사업투자 비용이 3억 달러 상당 폐소로서 최소 1,000개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연구개발 (R&D)	상업적 또는 사내 R&D 활동, 우수연구센터(Center of Excellence: COE) 설립, 혁신 및 기술개발 훈련기관

주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은 2008년 '재생에너지법'을 시행하는 규칙과 규정들이  
발효되면 동 리스트에서 제외됨.

자료 : www.op.gov.ph (2009년 3월 30일자 IPP)

#### IV. 외국인투자 환경

- 2009년 ‘우선 활동’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 유지 및 창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 리스트(Contingency List)<sup>9)</sup>가 한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정규 리스트(Regular List)’에는 <표 IV-1>의 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의무 리스트’는 기존 법에서 규정한 사업들로서 <표 IV-2>의 8개 사업이 투자우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 자동차 산업

- 필리핀 정부의 자동차개발프로그램(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MVDP)<sup>10)</sup>에 따라, 자동차 생산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자동차 개발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경우 완성차(Completely-Built-Up: CBU)를 모델별로 연간 1,000대까지 특혜 관세로 수입할 수 있음.
- 참여기업들은 매년 최소 10,000대의 통상적인 완성차(1대당 최소 FOB 금액 기준 5,000달러)를 수출하여야 하며, 처음 2년 동안 1대당 400달러, 3년째에는 300달러, 4년째에는 200달러, 5년째에는 100달러의 비율로 수출차량 대수에 따라 순외화수출(Net Foreign-Exchange Export: NFEE) 공제를 받음.

9) ‘비상 리스트’는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NEDA)이 공식적으로 경제위기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하면 삭제될 예정임. 다만, 투자위원회가 일부 지표에 근거하여 여전히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 동 리스트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음.

10) 자동차 개발프로그램(Car Development Program), 상용차 개발프로그램(Commercial Vehicle Development Program) 및 오토바이 개발프로그램(Motorcycle Development Program)을 총괄한 것임.

<표 IV-2>

투자우선계획의 의무 리스트

관 련 법	사 업 내 용
대통령령 제705호 (Presidential Decree 705)	필리핀 개정 임업법(Revised Forestry Code of the Philippines) <sup>주1)</sup> - 상업 및 산업 목적으로 나무작물(과수 제외)을 임지에 광범위하게 플랜테이션
공화국법 제7942호 (Republic Act 7942)	1995년 필리핀 광업법(Philippine Mining Act of 1995) <sup>주1)</sup> -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채굴, 채석 및 가공
공화국법 제8047호 (Republic Act 8047)	도서 또는 교과서의 인쇄, 출판 및 콘텐츠 개발 - 도서 또는 교과서의 인쇄, 재판, 출판 및 콘텐츠 개발
공화국법 제8479호 (Republic Act 8479)	1998년 다운스트림석유산업규제완화법(Downstream Oil Industry Deregulation Act of 1998) <sup>주2)</sup> - 정부가 인정한 물류허브에 소재한 정유, 저장 및 석유 제품 마케팅 사업
공화국법 제9003호 (Republic Act 9003)	2000년 생태학적고형폐기물관리법(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of 2000) - 폐기물 재활용 설비 구축 <sup>주1)</sup>
공화국법 제9275호 (Republic Act 9275)	2004년 필리핀 수질정화법(Philippine Clean Water Act of 2004) <sup>주1)</sup> - 산업폐수 처리설비 구축, 처리설비와 통합된 하수 집수 및 수질오염 통제기술 도입, 청정생산 및 폐기물 최소화
공화국법 제7277호 (Republic Act 7277)	장애인을 위한 대헌장(Magna Carta for Disabled Persons) - 장애인의 사용 및/또는 갱생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기의 제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만 맞도록 특별 학교, 주택, 거주공동체 또는 은퇴자마을 설립
공화국법 제9513호 (Republic Act 9513)	2008년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 - 공화국법 제9513호의 규칙과 규정들의 시행에 따름

주1 : 일반적으로 소득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 ITH)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주2 : 일반적으로 소득세 면제기간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다운스트림석유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소득세 면제기간 자격이 주어짐.  
 자료 : www.op.gov.ph (2009년 3월 30일자 IPP)

#### IV. 외국인투자 환경

- 순외화수출 공제는 수입관세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한도가 소진되면 완성차를 일반 관세율로 수입하여야 함.
- 동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무기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성차 수입에 대한 특혜 관세율은 10%(표준 관세율은 승용차 30%, 버스 및 화물차 20%)임. 한편,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계획에 따라, ASEAN 회원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1%의 특혜 관세율이 적용됨.
- 일반 완성차 수출 이외에 다음의 3가지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적용됨.
  - 개발적인 완성차(Developmental CBU) 수출 : 원래 수출용으로만 필리핀에서 생산되도록 계획된 완전히 새로운 기본모델 자동차로서 최소 생산물량은 연간 5,000대, 1대당 최소 FOB 가격은 5,000달러이어야 함.
  - 틈새 완성차(Niche CBU) 수출 : 현재 필리핀에서 조립되지 않는 모델이나, 필리핀에서 조립만 하도록 해당 설비가 이전될 계획으로 해당 자동차 모델과 변형 모델이 필리핀에서만 독점적으로 조립되는 시점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조립 물량은 연간 2,500대, 1대당 최소 FOB 가격은 10,000달러이어야 함.
  - 고가소량 완성차(High-value, low-volume CBU) 수출 : 최고급 자동차로서 최소 생산물량은 연간 2,500대, 1대당 최소 FOB 가격은 20,000달러이어야 함.

- 자동차 개발프로그램은 필리핀을 ASEAN의 자동차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자동차 조립업체들은 투자위원회(BOI)에 신청하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동 프로그램의 참여 자격은 수출 및 국내용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 제조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기간은 1년 이상이고, 투자금액은 승용차 조립업체는 1,000만 달러, 상용차 조립업체는 800만 달러, 오토바이 조립업체는 200만 달러 상당액이어야 함.
- 필리핀 정부는 특혜 관세율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중고차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자동차 개발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을 경쟁에서 보호하고 있음.
- 2009년 투자우선계획에 따라, 자동차 개발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개척지위’의 사업과 동일하게 6년간 소득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 광업

- 1995년 ‘필리핀 광업법’에 따라, 광물 물품세는 1~2%이고 투자자들에게 81,000ha까지 토지 탐사가 허용됨. 또한 광업은 투자우선계획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산업으로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외국기업들이 정부와 합작투자로 채굴지역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와 서명한 외국인기술지원계약(Foreign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FTAA)에 의거하여 광업

사업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

#### □ 석유산업

- 1998년 ‘다운스트림석유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투자위원회 및 에너지부는 석유제품의 정유, 저장, 유통 및 소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하였음.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면제 (단, 저개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소매 연료보급소는 토지비용을 제외한 자본이 최소 2,000만 페소이어야 함.)
- 과세소득에서 인건비 추가 50% 공제
- 수입 자본설비에 대한 특혜 관세 및 부가가치세 3% 적용 (단, 필리핀에서 제조되는 동종 장비의 수량이 충분하지 않고 품질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 국내 자본설비에 대한 세금 공제
- 위탁장비의 무제한 사용
- 수입 예비부품에 대한 면세, 세금 및 관세, 제품 및 기계류에 대한 부동산세, 계약세, 부두 사용료 및 수출세 면제
- 2006년 ‘바이오연료법(Bio-Fuels Act of 2006)’에 따라, 국내 또는 수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종량세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바이오연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해운산업

- 1992년 ‘필리핀 외항선박개발법(Philippine Overseas Shipping Development Act)’<sup>11)</sup>에 따르면, 내국인이 최소 60% 소유한 해운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 □ 출판산업

- 1995년 ‘출판산업개발법(Book Publishing Industry Development Act of 1995)’<sup>12)</sup>에 따라, 출판산업을 위한 서적 및 원료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및 면세수입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서적의 판매, 수입, 인쇄 및 유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기타 산업

- 석탄 생산기업들에게는 1976년 ‘석탄개발법(Coal Development Act of 1976)’<sup>13)</sup>에 따른 인센티브,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1991년 ‘철강산업강화법(Act to Strengthen the Iron and Steel Industry)’<sup>14)</sup>에 따른 투자위원회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 1998년 ‘보석산업개발법(Jewellery Industry Development Act of 1998)’<sup>15)</sup>에 따라, 동 산업에 대해 20%의 물품세를 면제

---

11) 공화국법 제7471호(Republic Act 7471)

12) 공화국법 제8047호(Republic Act 8047)

13) 대통령령 제1976호(Presidential Decree 1976)

14) 공화국법 제7103호(Republic Act 7103)

15) 공화국법 제8502호(Republic Act 8502)



#### IV. 외국인투자 환경

하고 훈련비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2004년 4월 제정된 ‘공화국법 제9290호(Republic Act 9290)’에 따라, 신발 및 가죽산업에 대해서는 수입 자본재 및 원료에 대해 영세율 관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2002년 11월 의회에서 통과된 ‘바랑가이소상공업체법(Barangay Micro-Business Enterprises Law)<sup>16)</sup>’에 따라, 총자산 300만 페소 이하의 기업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은행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

— 환경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는 2004년 10월 ‘행정명령 제2004/53호 (Administrative Order 2004/53)’에 따라, 공기오염 감소장치에 투자한 기업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환경관리국(Environment Management Bureau)에서 관련 장치의 운영 허가를 취득한 기업들은 총소득에서 공기오염 조절 장치의 마모에 대한 감가상각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기오염 조절장치 구입에 대한 세금공제, 공기오염 조절을 위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4) 지역 인센티브

— 투자위원회(BOI)의 투자우선계획(IPP)은 1987년 이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메트로 마닐라에 소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16) 공화국법 제9178호(Republic Act 9178)

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음. 반면, 필리핀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인 민다나오 이슬람자치지역(ARMM)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대상 사업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음.

— ‘종합투자법(OIC)’에 따라, 저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해당사업의 개척 또는 비개척 지위에 관계없이 6년간 소득세 면제, 주요 인프라 및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100% 세금 공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저개발지역의 개척 및 비개척 기업들이 ①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에 대한 자본재의 비율이 근로자 1인당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순외화수입이 영업 첫 3년간 연간 최저 50만 달러인 경우, ③ 현지원료 사용분이 전년도 총 원료비의 최소 50%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1년간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투자위원회는 천연자원의 관리 개선을 위하여 광업 및 삼림 채취, 또는 원료 산지 인근의 광물 및 산림제품 가공업에 대해서는 상기의 추가 인센티브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 (5) 수출 인센티브 및 수출지대

### □ 개요

— 1994년 ‘수출자를 위한 대헌장(Magna Carta for Exporters)’<sup>17)</sup>에 따라, 수출품 생산을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세금 면제, 생산 및 포장을 위한 수입 원료에 대하여 5년간 세금 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

17) 공화국법 제7844호(Republic Act 7844)

#### IV. 외국인투자 환경

- 동 인센티브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이 총수입의 최소 50%를 차지하여야 하고, 투자위원회(BOI),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 상공부(DTI)의 수출무역촉진국 또는 의류섬유수출청(의류 수출업체의 경우)의 인정을 받아야 함.
- 기존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고 국내 원료 및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단계 인센티브 시스템 내에서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한 기업들은 최종 세금액산액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수출액 증가율이 5%까지는 2.5%, 5~10%는 5%, 10~15%는 7.5%, 15%를 초과한 경우는 1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신청시점에 수출무역촉진국이 최소 2년 연속 수출한 것으로 인정한 상품 직수출자에게만 세금공제 혜택이 제공됨.
  - 반면, 소득세 면제기업, 부가가치세 면제기업, 재수출용 상품 수입기업 또는 국내 부가가치요건이 10% 이하인 수출기업 등은 동 세금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 수출가공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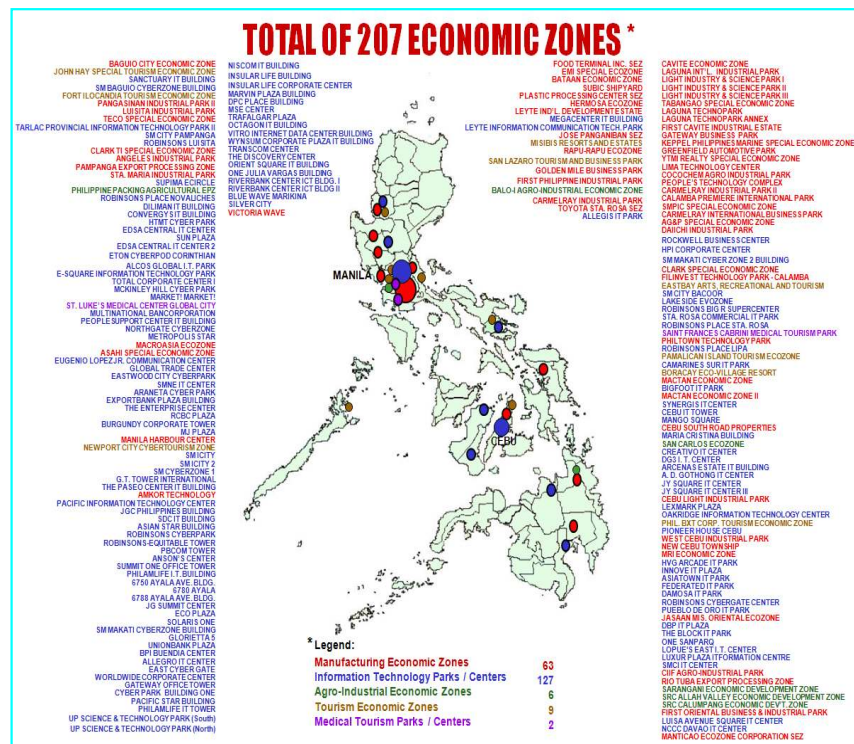
- 1995년 6월 발효된 ‘특별경제지대법’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경제지대(Ecozone) 또는 4개의 수출가공지대(Export-Processing Zone: EPZ)에 소재한 수출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
- 4개의 수출가공지대는 다음과 같음.

- 바타안(Bataan) 수출가공지대 : 1969년에 설립된 필리핀 최초의 수출가공지대로서 마닐라에서 만을 가로질러 맞은편에 위치한 바타안 반도의 마리벨레스(Mariveles)에 소재하고 있음. 345ha의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주조건은 해당 사업의 연간 잠재 수출액이 최소 100만 달러이어야 함.
- 막탄(Mactan) 수출가공지대 : 세부 주의 막탄 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12ha임. 인근 막탄 국제공항에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도쿄행 직항편과 대만, 미국 등으로 가는 전세 항공편이 있음. 필리핀에서 두 번째 주요 항구인 세부 시에서 14km 떨어져 있으며, 마닐라에서는 상업용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음.
- 바기오 시(Baguio City) 수출가공지대 : 해발 1,500m 높이의 바기오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늘한 기온을 필요로 하는 전자 및 기타 첨단기술 사업을 위해 계획되었음. 면적은 62ha로 마닐라에서 차로 5~7시간, 비행기로 45분이 소요되며, 컨테이너 수송트럭이 매일 드나들고 있고 통신장비 및 주거 이용이 가능함.
- 카비테(Cavite) 수출가공지대 : 메트로 마닐라 남부, 마닐라의 금융 및 상업지역에서 약 30km 떨어진 평탄한 지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75ha로 포장도로를 통해 차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ñ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까지는 약 2시간, 마닐라 남항(Manila South Harbor)까지는 약 2시간 반이 소요됨. 현재 전력, 용수 및 통신시설은 양호한 편이며, 필요한 인력을 카비테나 메트로 마닐라에서 조달할 수 있음.

#### IV. 외국인투자 환경

- 수출가공지대에 대한 인센티브들로는 ① 3~8년간 소득세 면제, ② 수입 자본장비, 예비부품, 원료 및 공급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 ③ 소득세 면제기간 경과 후 국세 및 지방세 면제, ④ 수입대체에 대한 세금 공제, ⑤ 부두 사용료, 수출세, 수입세 및 수수료 면제, ⑥ 국내 자본장비에 대한 세금 공제, ⑦ 근로자 훈련비에 대한 추가 공제, ⑧ 외국인투자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⑨ 외국인 고용 허가, ⑩ 노무비 추가 공제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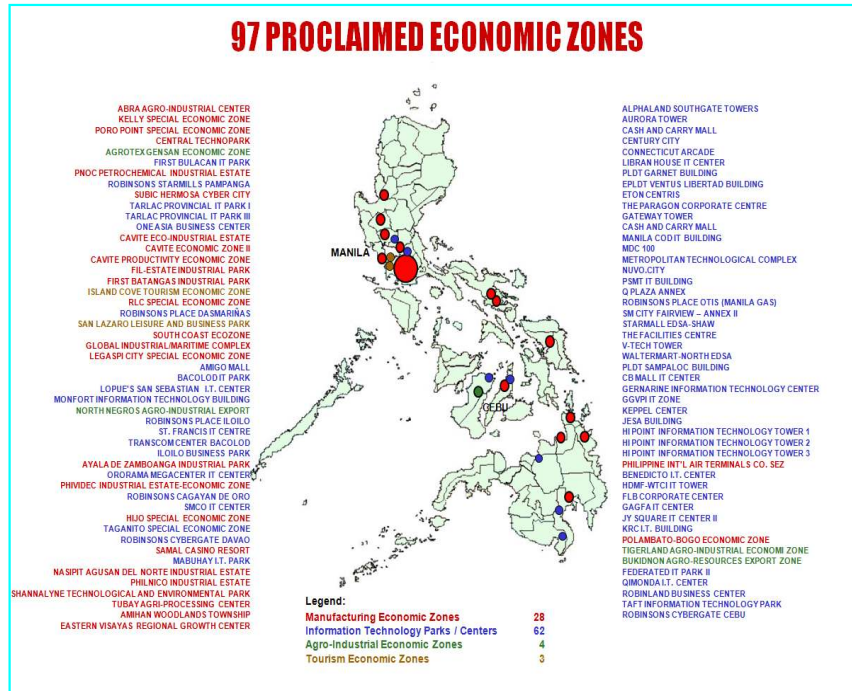
<그림 IV-1> 필리핀 경제지대 분포 현황



주 :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필리핀에서는 총 207개의 경제지대(농공업경제지대 6개, IT단지/센터 127개, 제조업경제지대 63개, 의료관광단지/센터 2개, 관광업경제지대 9개)가 운영되고 있음.

자료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www.peza.gov.ph)

<그림 IV-2> 개발중인 필리핀 경제지대 분포 현황



주 :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필리핀에서는 총 97개의 경제지대(농공업경제지대 4개, IT단지/센터 62개, 제조업경제지대 28개, 관광업경제지대 3개)가 개발되고 있음.

자료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www.peza.gov.ph)

### □ 기타 경제지대

— 경제지대(Ecozone) 입주 희망기업은 필리핀 경제지대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규제부(Enterprise Regulations Department) 앞으로 신청서와 함께 사업개요, 3개년도 소득세 신고서 또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 임원들의 신상명세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고 3,600 페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IV. 외국인투자 환경

·기업규제부가 신청서를 필리핀 경제지대청 위원회로 발송하여 동 위원회가 등록신청을 승인하면, 필리핀 경제지대청의 법률서비스 부서가 선등록 요건을 처리함. 이를 위해 해당 기업은 6,000페소의 등록비 납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사업 소재를 위한 허가, 미성년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증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환경준수증명서(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ECC)가 필요한 사업은 필리핀 경제지대청의 환경안전그룹(Environmental Safety Group)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안전그룹과 필리핀 경제지대청이 등록동의서(registration agreement)에 함께 서명함.

— 수출지향기업 앞 원료 및 포장재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료 공급업자는 지역세무서(Revenue District Offi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송장에는 ‘영세율 판매’ 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 1992년 ‘기지전환개발법(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ct of 1992)<sup>18)</sup>에 따라 설립된 수빅만 자유무역항 특별경제지대(Subic Bay Free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에서는 동 지대로 수입되는 원료 및 자본장비에 대해 세금 및 관세 면제, 총소득에 대해 5%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등 모든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8) 공화국법 제7227호(Republic Act 7227)

- 2007년 3월 제정된 ‘공화국법 제9400호(Republic Act 9400)’에 따라, 클라크 특별경제지대(Clark Special Economic Zone), 캠프 존 헤이(Camp John Hay), 포로 포인트(Poro Point) 및 모롱(Morong) 등 다른 4개 특별경제지대에도 동일한 세금우대 조치가 적용됨.

## 다. 외국인투자 규제조치

### □ 외국인투자 제한분야

- 2007년 1월 6일부터 발효된 외국인투자 Negative List<sup>19)</sup>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List A는 필리핀 헌법, 특별법,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해 특별히 제한된 분야를 나열하고 있음.
- List B는 안전, 방위, 보건 및 도덕 위험, 중소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지분 보유한도가 40%로 제한되어 있는 부문들을 열거하고 있음.
- 화기, 화약, 다이너마이트, 폭발물, 폭약, 망원 조준기, 적외선 조준기 및 유사 장비의 제조, 수리, 저장 및 유통(필리핀 경찰의 사전 허가 필요)

19) 2006년 12월에 제정된 행정명령 제584호(Executive Order 584)에 의거한 7차 Negative List임.



<표 IV-3> Negative List (List A)

부 문	외국인 지분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li> <li>• 대중매체 (기록 제외)</li> <li>• 사설 경호업</li> <li>• 납입자본금이 250만 달러 미만의 소매업</li> <li>• 엔지니어링, 의료 및 관련업, 회계, 건축, 화학, 범죄학, 통관 중개, 환경 계획, 임업, 지질학,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술, 법률, 도서관학, 항해사, 기관사, 배관장, 설탕 기술, 사회복지사업, 교습, 농어업 등 면허 전문직 수행을 포함한 서비스</li> <li>• 소규모 광산</li> <li>• 필리핀 군도의 바다,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해양 자원의 이용</li> <li>• 투기장의 소유, 운영 및 관리</li> <li>•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및/또는 유통</li> <li>• 생물, 화학/방사성 무기와 대인용 지뢰의 제조, 수리, 비축 및/또는 유통</li> <li>• 폭죽 및 기타 불꽃 장치의 제조</li> </ul>	0% (외국인 투자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설 라디오 통신 네트워크</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고용 관련 근로자의 사적 채용</li> <li>•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지방 관급공사의 국내 건설 및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tended Build-Operate-Transfer(BOT)법(공화국법 제 7718호)’에 포함된 인프라 및 개발사업</li> <li>- 외국 자본 또는 지원을 받아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li> </ul> </li> <li>• 방위 관련 건조물의 건설</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대행업</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및 옥수수의 경작, 생산, 제분, 가공 및 무역(소매 제외)/교환, 구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쌀 및 옥수수와 부산물의 획득</li> <li>• 공공사업의 운영 및 관리</li> <li>• 교육기관의 소유/설립 및 운영</li> <li>• 심해 상업 어선의 운영</li> <li>• 정부 소유 또는 통제 법인, 회사, 기관 또는 시당국 앞 공급</li> <li>• 사유지 또는 아파트의 소유</li> <li>•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li> </ul>	40%

<표 IV-3> 계속

부 문	외국인 지분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BOT 사업의 제안 및 운영</li> <li>• 조정 회사</li> <li>• 개별 단위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법인이 소유한 공동 구역이 있는 아파트의 소유</li> </ul>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입자본금이 최소 250만 달러 이상 750만 달러 미만의 소매업</li> <li>•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li> <li>•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투자회사</li> </ul>	60%

- 전쟁용 총기류 및 탄약, 군수품 및 부품, 총포, 폭격 및 사격 통제 시스템, 유도 미사일 시스템 및 구성품, 전술용 항공기, 우주선, 전투용 차량, 무기 수리 및 유지 장비, 군사 통신장비, 암시 장치, 유도 방출 장비, 군사력 훈련장비 등을 포함한 국방부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생산품의 제조, 수리, 저장 및/또는 유통
- 위험 약물의 제조 및 유통
- 공중위생 및 도덕 위험의 이유로 법이 규제하는 사우나, 증기 목욕탕, 마사지 클리닉 및 유사 활동
- 경마장 운영 등 모든 형태의 도박
-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상당 미만의 내수기업
- 첨단기술과 관련이 있거나 최소 50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기업으로서 최소 납입자본금 10만 달러인 내수기업

## 라. 외국인투자 형태 및 절차

### (1) 개 요

#### □ 투자허가 체크리스트

— 필리핀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음.

- 증권거래위원회(SEC) 앞 법인 및 파트너십 등록
- 무역규제소비자보호국(Bureau of Trade Regul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BTRCP) 앞 회사명/단독소유권 등기
- ‘종합투자법(OIC)’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투자위원회(BOI) 앞 등록
- 수출가공지대(EPZ)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들은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 앞 등록
- 외국인투자는 자본금의 본국 재송금 및 이익 송금을 위하여 필리핀 중앙은행(BSP) 앞 등록
-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앞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및 부가가치세 등록번호(Value-added Tax Registration Number) 신청
- 메트로 마닐라 소재 기업들은 시정부에서 소재 승인/사업허가 취득

- 회사 설립 소재지의 시청에서 건축 허가 및 면허 취득
- 고용주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SSS) 번호 취득
-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health) 앞 회원 가입
- Manila Electric Company(Meralco)의 영업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Meralco에, Meralco의 비영업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해당 지방의 전력공급회사에 전력공급 서비스 신청

## (2) 현지법인 설립

### □ 투자 유관기관

-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규 또는 확장에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투자위원회(BOI)가 외국인투자를 담당하는 1차적인 정부기관이나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투자위원회 등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 및 파트너십을 등록, 규제, 허가 및 감독하고 있으며, 증권의 발행 및 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 상공부(DTI) 산하의 무역규제소비자보호국(BTRCP)이 개인기업의 등록 및 규제를 관할하고 있음.

#### IV. 외국인투자 환경

- 수입 및 수출자금 조달을 포함한 외화거래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관할 업무이며, 투자 목적의 모든 외화 유입은 향후 이익 송금 및 자본 재송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가대리은행(Authorized Agent Bank: AAB)을 통해 필리핀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함.

#### □ 투자절차

-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지 않는 경우, 신규 외국인투자는 투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은 무역규제소비자보호국에 등록할 수 있음.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필리핀 정부가 수출지향 사업을 선호함에 따라, 수출지향 사업에 많은 인센티브와 높은 외국인 지분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현지인의 참여가 필요한 금융회사의 설립 또는 토지 취득, 현지기업들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마케팅 및 유통 부문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필리핀 파트너가 없을 경우 지장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투자위원회 앞으로 신청서(양식 작성), 사업보고서<sup>20)</sup>, 증권거래위원회의 등록 증명, 정관, 3개년 재무제표, 소득세 신고서 및 이사회 결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 신청서 및 사업보고서 양식은 투자위원회 웹사이트([www.boi.gov.ph](http://www.boi.gov.ph))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 투자자들은 투자위원회 등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투자위원회의 사업등록심사부(Project Registration and Evaluation Department) 앞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한 인센티브는 정상적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승인됨.
- 수출지대 또는 공업단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수빅만 자유무역항 특별경제지대에 소재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확장은 인센티브를 받거나 주식 총수를 늘릴 필요가 없을 경우<sup>21)</sup>에는 보통 관련 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사업 확장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화를 필리핀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상업은행들과 연관된 모든 투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업, 투자회사, 자금조달회사, 뮤추얼펀드의 등록을 담당하고,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ssion)가 신규 보험 및 재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에너지부가 석유 및 가스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나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천연자원부(DENR)의 승인이 필요함. 시멘트, 화학제품, 직물, 석유, 채광, 펄프 및 종이, 금속제품 등의 사업에 필

21)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고, 주식 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함.

#### IV. 외국인투자 환경

요한 환경준수증명서(ECC)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운송통신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가 항공, 해양 및 육상 수송, 통신 및 우편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취급하며, 관광 관련 투자는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의 승인이 필요함.
- 1997년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제약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술이전계약을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기록정보기술이전국(Documentat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Bureau)에 등록하여야 함.
- 투자위원회는 외국인의 투자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고 투자절차 및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One-Stop Action Center (OSAC)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음.
- OSAC가 면허, 허가, 수입 및 세금과 같은 투자 관련 요건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한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는 OSAC 앞으로 정부기관 및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필리핀 수출자연합(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Philexport)에 따르면, 투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등록이 여전히 번거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 기업 인수

- 필리핀의 ‘회사법(Corporation Code)’은 회사 자산 또는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및 인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000년 8월 발효된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sup>22)</sup>에 따라, 상장회사의 인수를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의 보유주식 매입을 제안하여야 함.
- 상장회사 의결권의 최소 35%를 일시에 취득하려는 경우 공개매입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1년에 걸쳐 의결권의 최소 30%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공개매입을 하여야 함.
- 공개매입에 포함되는 주식 수는 해당 상장회사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 수와 동일하여야 하며, 공개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가격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입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요건에 부합하면 자동적으로 공개매입 규정에서 면제됨.
- 필리핀 헌법에 따라, 무역을 제한하고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독점, 흡수합병 및 사업합병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의회가 이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킨 적은 없음.
- 외국기업은 내국인 지분 100% 소유로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 현지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 미디어 기업, 광고회사 및 교육기관 등 일부 전략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음.

22) 공화국법 제8799호(Republic Act 8799)



(4) 건축 및 관련 허가

- 공장, 건물 또는 토지 개량 등 건설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은 먼저 주택토지이용규제위원회(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가 발급하는 소재허가(clearance for location)를 받아야 하고, 해당 소재지 지방정부로부터 건축 및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함.
-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의 승인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수출가공지대(EPZ) 및 공업단지의 행정관이 건축 및 관련 허가 취득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5) 환경법

- 필리핀의 환경 규정으로는 1977년 발효된 ‘필리핀 환경정책 (Philippine Environmental Policy)’<sup>23)</sup> 및 ‘필리핀 환경규정 (Philippine Environmental Code)’<sup>24)</sup>, 환경영향 진술시스템을 제정한 1978년 규정<sup>25)</sup>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업들은 환경천연자원부(DENR)의 환경관리국으로부터 환경준수증명서(ECC)를 받아야 함.
- 환경영향 진술서는 석유 및 석유화학, 금속 및 제련, 채광, 채석 및 기타 형태의 자원 추출, 임산물, 어업, 인프라,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임.

23) 대통령령 제1151호(Presidential Decree 1151)

24) 대통령령 제1152호(Presidential Decree 1152)

25) 대통령령 제1586호(Presidential Decree 1586)

· 관련 지역들은 국립공원, 유역 보존지역, 야생 보호지역 및 필리핀 문화적 소수민족의 본거지 등이며, 관련 주요산업으로는 화학제품, 식물, 시멘트, 펄프 및 종이, 식품 가공, 기계 제조 및 조립, 제혁 등이 있음.

— 투자위원회(BOI)의 환경관련 지원부서,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 및 수빅만 광역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의 환경보전센터(Ecology Center)가 환경준수증명서 취득 관련 상담을 하고 있음.

— 1999년 6월 일부 기업들과 석유회사들의 강력한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획기적인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였음. 동법에 따라, 소각로의 사용이 금지되고, 2006년 1월 1일까지 생체의학 소각로의 단계적 철수가 규정되었으며, 기존 법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 및 화전만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음.

— 2003년 1월에 완전히 발효된 ‘대기오염방지법’은 다음의 오염정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1월 1일까지 휘발유에서 모든 납 첨가제 제거
- 2003년 1월 1일까지 공해성 유기화합물(방향족 내용물)을 휘발유에서는 50%에서 35%로, 벤젠에서는 5%에서 2%로 감축
- 자동차 및 공장에서 사용되는 디젤 연료의 유황 내용물 감축
- 시멘트 생산업체, 발전회사, 화학 및 자동차 업체들의 공해방지 장치 설치

#### IV. 외국인투자 환경

- 1995년 ‘필리핀 광업법’의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 IRR)에 따라 광업회사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부과되었음. 1996년 마린두케(Marinduque) 주의 중부 Boac River에 소재한 Marcopper Mining(당시 캐나다 Placer Dome이 부분 소유)의 설비에서 유해 광산 부스러기들이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광업회사들은 다음의 조치들을 실시하여야 함.
  - 탐사 기간 중 교란된 환경의 보호 및 복구를 포함하는 상세한 포괄적·전략적 환경 관리 계획 제출
  -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환경보증기금 출연
  - 환경 관련 자본적 지출에 총 사업비용의 최소 10% 할당
  - 현지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광산의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원주민들과 지역사회로부터 ‘고지(告知)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것
  - 원주민들에게 총 생산량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로열티 수수료 지급

#### (6) 부동산 취득

- 필리핀 국민 단독 또는 필리핀 국민이 자본금의 최소 60%를 소유한 법인 및 단체들만이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음. 1966년 발효된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Law)<sup>26)</sup>에 따라, 외국인은 콘도미니엄 사업에서 아파트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26) 공화국법 제4726호(Republic Act 4726)

- 1993년 6월 시행된 ‘투자자임대법’은 최대 토지 임차기간을 25년에서 50년으로 두 배로 연장하면서 25년 기간의 갱신 가능성은 계속 유지하였음. 동법은 공업단지, 공장, 조립공장, 가공공장, 농업 관련 기업, 공업 및 상업용 토지 개발사업, 관광사업 및 유사 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됨.
- 장기 임차권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의 경우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야 하고, 투자금액의 70%는 임대차 계약 서명 후 3년 이내에 투자되어야 함. 한편, 최상 농지는 임차권 연장의 자격에서 특별히 제외됨.
- 1988년 6월 시행된 ‘포괄적 농지개혁법(CARL)’은 농지의 재분배를 규정하여 기업은 1,000ha, 개인은 500ha를 초과하는 토지의 임차권 계약에서 한도를 초과한 토지는 즉시 재분배되도록 하였음.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소규모 토지 임대차는 기술적으로 1992년 8월 29일에 시작하는 재분배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최종 실시기한이 현재까지 무시되고 있으며, 2009년 2월까지 외국인에게 임차된 농지의 재분배 사례는 없음.
-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절차 및 시스템은 있으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명확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절차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번잡한 것으로 알려짐.

(7) 국산화 비율 요건

- 2003년 7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관련 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에 관한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승용차 및 상용차 조립회사의 국산화 비율요건이 폐지되었음.
- 2002년 9월 서명된 ‘Memorandum Order 73’ 및 2002년 12월 ‘행정명령 제156호(Executive Order 156)’에 따라, 국산화 비율 및 외화가득 요건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음.
- 그러나 일부 산업은 여전히 현지 조달을 요구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입 반(半)합성 향생물질의 수입비용이 현지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최소 20% 낮지 않을 경우, 제약회사들은 반(半)합성 향생물질을 특정 현지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 2000년 10월 제정된 ‘공화국법 제8970호’에 따라, 제조업자들에게 세제 바(bar) 및 비누에 경질 계면활성제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야자유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음.
- 2000년 ‘소매업자유화법’에 따르면, 2001년 4월 1일부터 첫 10년간 현지 조달을 의무화하고 있음. 동 기간 중에는 사치품만 취급하는 외국 소매업체가 아닌 경우 재고의 최소 30%를, 사치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재고의 10%를 필리핀에서 조립된 상품으로 구성하여야 함.

## (8) 현지법인 설립

- 필리핀의 주요 사업형태는 법인, 파트너십, 개인기업 등으로 다국적 회사들은 지점, 자회사,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계약, 합작투자 계약 또는 지역본부 등을 설립 및 등록할 수 있음. 가장 일반적인 사업형태는 주식회사로 설립허가가 5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후 50년간 연장 가능함.
- 법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립자들이 제안된 정관 및 내규에 동의한 다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으로 정관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증권거래위원회는 다음 서류들을 등록청(Records Division) 앞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회사명 확인증(name verification slip)<sup>27)</sup> 또는 동일 회사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회사명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설립자 또는 이사의 동의
  - 국세청(BIR)의 납세자번호(TIN)
- 주식회사에 외국인 출자자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외국인 여권 사본, 비거주 외국인출자자의 투자자금 국내송금 증명(은행의 증명서)을 요구하며, 납입자본이 현물 및 현금으로 구성된 경우, 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 담당자는 계획된 자본총액의 최소 25%가 출자되었고, 출자금의 25%가 납입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그러나 정책적으로 증

27) 해당 기업의 회사명이 다른 기업의 회사명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이나 증권거래위원회의 Name Verification Unit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IV. 외국인투자 환경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인의 첫 출자금은 법인 설립시 전부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설립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임명함. 필요한 서류목록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www.sec.gov.ph](http://www.sec.gov.ph))에서 입수할 수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는 등록청을 통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7영업일 이내에 등록신고서를 발급함. 등록 신청서 양식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다른 필요 서류들과 함께 증권거래위원회의 회사등록부(Company Registration Department)에 제출되어야 함. 필수 납입자본금은 인가 상업은행(accredited commercial bank)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등록증을 취득한 후, 본사가 소재할 시(지방자치체)의 지방정부(보통 시장실)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사회보장제도(SSS), 재무부 및 필리핀 중앙은행(BSP) 등 다른 정부기관들 앞으로 관련 사항들을 등록하여야 함. 은행 또는 금융중개기관을 설립할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함.
- 부분적으로 제한된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이사회에 외국인을 선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허용되는 외국인의 참여 또는 납입자본 지분에 비례하여 허용됨.

## (9) 지점 설립

— 외국회사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면 지점 또는 거주 대리인을 통해 사업허가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음. 지점 설립을 위해 증권거래위원회 앞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점 설립을 허가하는 이사회 결의서 사본
- 독립 회계사에 의해 공인된 신청 바로 이전 연도의 재무제표
-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본을 첨부한 정관 사본
- 은행 증명서 등 국내 송금 증명
- 신청서(양식 작성)
- 회사명 확인증
- 등록 데이터 시트

—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지급 능력이 있음을 진술하는 대표 또는 거주 대리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의 이사회 결의서, 정관 및 재무제표 등 해외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들을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지점과 자회사는 사업허가 및 투자를 위하여 동일한 등기료와 요건들을 적용받으며, 세금 목적상으로도 구별되지 않음. 그러나 지점에서 본사로 송금되는 세후이익에 대해 지점은 15%의 이익 송금세를 납부하여야 함.



#### IV. 외국인투자 환경